

2022년

2022년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협약서



협약일자: 2021. 12. 23.

협약장소: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당항포관광지

위탁자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고성군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



수탁자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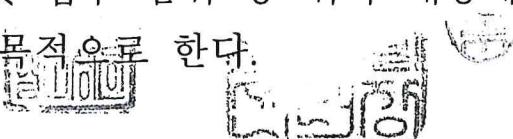
고성지역자활센터장 신진수



2022년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협약서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협약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관광지사업소를 “계약자” (이하 “계약자” 라 칭한다)라 하고 고성지역자활센터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 라 칭한다)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등 청소 및 관리에 따른 인력 지원 및 업무 범위 등 위탁 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책임과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금액) 본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금액은 금62,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작업범위) ① 본 위탁의 주된 작업 범위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내 수목 부산물(가지, 낙엽) 수거, 관광지 행사장 환경 정비이며, 그 외 작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상호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에 필요한 부대 장비 및 소모품은 “계약자” 가 부담하며 인력 관리는 “계약상대자” 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2022. 1. 2. 부터 2022. 12. 31.까지로 한다.

② 당항포관광지 위탁 근로시간은 09:00 ~ 17:30(동절기 09:00 ~ 16:30)으로 하되, 기상 여건 및 작업환경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조정한다.

제5조(투입인원) ① 1일 투입 인원은 평일 6명, 토 · 공휴일은 6명(일요일 제외)으로 하되, 관광지 휴장·축제·재난·기상악화 등 투입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용역 완료 시 연 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한다. 단, 상호 협의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투입 예산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② 투입 인원은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정결한 작업 복장으로 집결 후 관리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③ 근무복은 “계약자”가 지급하고,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세탁 등 복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투입 인원에 대한 명단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 시는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① “계약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대가를 1개월 단위로 사후 정산 후 매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처는 “계약상대자”로 한다.

- ② 1인 1일 협약 단가는 평일 18,000원, 토·공휴일은 90,000원으로 한다.
- ③ 법정 의무교육은 출근한 것으로 하고 “계약자”가 부담하되, 교육 전반에 따른 주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책임진다.

제7조(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작업원에 ~~대하여~~ 5대 (퇴직연금 포함) 보험 가입, 임금 지급, 작업 중 상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자” 및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 “계약자”가 재협의를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인력운영 등)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중 관리반장을 선임하고, 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월 단위로 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협약 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협약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자”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 및 감독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3. 기타 “계약자”的 예산 사정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때

제11조(해석) 본 협약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약정체결일

2021. 12. 23.



계약자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고성군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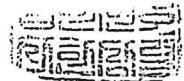
계약상대자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36

고성지역자활센터장 신진수(인)



2021년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협약서



협약일자: 2020. 12. 28.

협약장소: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당항포관광지

위탁자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고성군관광지사업소장 동승근

수탁자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
 고성지역자활센터장 신진수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협약서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협약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관광지사업소를 “계약자” (이하 “계약자” 라 칭한다)라 하고 고성지역자활센터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 라 칭한다)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등 청소 및 관리에 따른 인력 지원 및 업무 범위 등 위탁 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책임과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업범위) ① 본 위탁의 주된 작업 범위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내 수목 부산물(가지, 낙엽) 수거, 관광지 행사장 환경 정비이며, 그 외 작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상호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에 필요한 부대 장비 및 소모품은 “계약자” 가 부담하며 인력 관리는 “계약상대자” 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2021. 1. 1. 부터 2021. 12. 31.까지로 한다.
② 1일 작업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9:00 ~ 18:00(동절기 09:00 ~ 17:00)로 하되, 기상 여건 및 작업환경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조정 한다.

제4조(투입인원) ① 1일 투입 인원은 평일 6명, 토·공휴일은 6명(일요일 제외)으로 하되, 관광지 휴장·축제·재난·기상악화 등 투입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용역 완료 시 연 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한다. 단, 상호 협의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투입 예산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② 투입 인원은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정결한 작업 복장으로 집결 후 관리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③ 근무복은 “계약자”가 지급하고,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세탁 등 복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투입 인원에 대한 명단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 시는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매가지급) ① “계약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대가를 1개월 단위로 사후 정산 후 매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처는 “계약상대자”로 한다.

② 1인 1일 협약 단가는 평일 16,000원, 토·공휴일은 90,000원으로 한다.

③ 법정 의무교육은 출근한 것으로 ~~하여~~ “계약자”가 부담하되, 교육 전반에 따른 주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책임진다.

제6조(책임 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투입된 작업원에 대하여 5대 (퇴직연금 포함) 보험 가입, 임금 지급, 작업 중 상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자” 및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 “계약자”가 재협의를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인력운영 등)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중 관리반장을 선임하고, 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월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협약 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협약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자”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 및 감독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3. 기타 “계약자”的 예산 사정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때

제10조(해석) 본 협약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약정체결일 2020. 12. 28

계약자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고성군관광지사업소장 동승근 (인)

계약상대자 : 경남 고성군 고성읍 통영로 156번길 36

고성지역자활센터장 신진수

당항포관광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민간 위·수탁 협약서

당항포관광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인력지원과 관련하여 관광지사업소를 “갑” (이하 “갑”이라 칭한다)이라 하고 고성지역자활센터를 “을” (이하 “을”이라 칭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당항포관광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 인력지원 위탁기간은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일 작업시간은 09:00 ~ 18:00(동절기 09:00~17:00)로 한다.

제3조(투입인원) ① 1일 투입인원은 평일 6명, 토·공휴일은 6명(일요일 제외)으로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수급 될 수 있다. 단 2020년 엑스포 행사기간동안(2020. 4. 17. ~ 6. 7.) 투입인원은 요일 상관없이 매일 6명으로 한다.

② 투입인원은 09:00까지 지정된 장소에 작업 복장으로 집결 후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③ 작업복장은 자활근무복(조끼 등)을 착용하며 다른 근무 인력과 구분 되도록 한다.

④ “을”은 1개월 단위로 투입인원에 대한 명단내역을 제출 하여야 하며, 변동 시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범위) ① 당항포관광지의 청소, 수목, 화초, 기타부대시설 유지관리 등이며 그 외 작업내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각종 행사 등 필요시에는 ~~본공~~ 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를 책임한다.

② 작업에 필요한 부대 장비는 “갑”이 ~~부담하며~~ 인력관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실비보상금지급) ① “갑”은 투입인력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은 1개월 단위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처는 “을”(고성지역자활센터)로 한다.

② 1인 1일 협약단가는 평일 15,250원, 토·공휴일은 88,170원으로 한다.

제6조(책임한계) ① “을”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하여 5대(퇴직연금 포함) 보험 가입, 임금지급, 작업 중 상해 등 일체의 책임은 고성지역자활센터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작업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사상을 가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조건)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여건변화에 따라 “갑”이 재협의를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인력운영 등) “을”은 작업원 중 관리반장을 선임하고, 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갑”에게 월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협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인력수급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 및 감독사항을 “을”이 위반하였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3. 기타 “갑”의 예산사정에 따라 작업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때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약정체결일 2019. 12. 27.

갑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관광지사업소장 (인)

을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36
고성지역자활센터장 신진수 (인)

당항포관광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민간 위·수탁 협약서

당항포관광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인력지원과 관련하여 관광지사업소를 “갑” (이하 “갑”이라 칭한다)이라 하고 고성지역자활센터를 “을” (이하 “을”이라 칭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당항포관광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 인력지원 위탁기간은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일 작업시간은 09:00~18:00(동절기 09:00~17:00)로 한다.

제3조(투입인원) ① 1일 투입인원은 평일 6명, 토·공휴일 6명(일요일 제외)으로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수급 될 수 있다.

② 투입인원은 09:00까지 지정된 장소에 작업 복장으로 집결 후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③ 작업복장은 자활근무복(조끼 등)을 착용하며 다른 근무 인력과 구분 되도록 한다.

④ “을”은 1개월 단위로 투입인원에 대한 명단내역을 제출 하여야 하며, 변동 시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범위) ① 당항포관광지의 청소, 수목, 화초, 기타부대시설 유지관리 등이며 그 외 작업내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작업에 필요한 부대 장비는 “갑”이 부담하며 인력관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실비보상금지급) ① “갑”은 투입인력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은 1개월 단위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처는 “을”(고성지역자활센터)로 한다.

② 1인 1일 협약단가는 평일 19,310원, 토·공휴일은 80,160원으로 하며, 협약단가 이상의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6조(책임한계) ① “을”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하여 5대(퇴직연금 포함) 보험 가입, 임금지급, 작업 중 상해 등 일체의 책임은 고성지역자활센터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작업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사상을 가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조건)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여건변화에 따라 “갑”이 재협의를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인력운영 등) “을”은 작업원 중 관리반장을 선임하고, 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갑”에게 월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협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인력수급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 및 감독사항을 “을”이 위반하였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3. 기타 “갑”的 예산사정에 따라 작업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때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약정체결일 2019. 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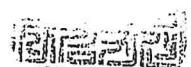
갑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고성군 관광지 사업소(장) (인)
대표자 오세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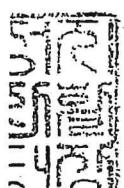
을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36

고성지역자활센터(장) 신진수(인)
대표자



당항포관광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민간위.수탁 계약서(안)

당항포관광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인력지원과 관련하여 관광지사업소를 “갑” (이하 “갑”이라 칭한다)이라 하고 고성지역자활센터를 “을” (이하 “을”이라 칭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당항포관광지 청소 및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 인력지원 위탁기간은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일 작업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제3조(투입인원) ① 1일 투입인원은 평일 8명, 토·공휴일은 4명으로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수급 될 수 있다.
② 투입인원은 09:00까지 지정된 장소에 작업 복장으로 집결 후 관리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③ 작업복장은 자활근무복(조끼 등)을 착용하며 다른 근무 인력과 구분 되도록 한다.
④ “을”은 1개월 단위로 투입인원에 대한 명단내역을 제출 하여야 하며, 변동 시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범위) ① 당항포관광지의 청소, 수목, 화초, 기타부대시설 유지관리 등이며 그 외 작업내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작업에 필요한 부대 장비는 “갑”이 부담하며 인력관리는 “을”的 책임으로 한다.

제5조(실비보상금지급) “갑”은 투입인력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은 1개월 단위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처는 “을”(고성지역자활센터)로 한다.

제6조(책임한계) ① “을”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하여 5대(퇴직연금 포함) 보험 가입, 임금지급, 작업 중 상해 등 일체의 책임은 고성지역자활센터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작업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사상을 가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조건)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여건변화에 따라 “갑”이 재협의를 요구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인력운영 등) “을”은 ~~작업원 등~~ 관리반장을 선임해 ~~보는 데~~ ~~관련~~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갑”에게 월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협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인력수급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 및 감독사항을 “을”이 위반하였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3. 기타 “갑”的 예산사정에 따라 작업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때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약정체결일 2017. 12. 30..

갑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고성군 관광지 사업소(장)
대표자 박정규



을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56 (동외리 36)

고성지역자활센터(장) 신진수

